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특허법인 다나  
  
대한민국 0624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3길 11 광성빌  
딩 신관 5층

발송일 (일/월/년) 2020년 05월 14일 (14.05.2020)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X19C11C0139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20/001457**

국제출원일 (일/월/년)  
2020년 01월 31일 (31.01.2020)

우선일 (일/월/년)  
2019년 03월 29일 (29.03.2019)

국제특허분류(IPC)  
**B32B 7/023(2019.01)i, B32B 27/30(2006.01)i, B32B 3/26(2006.01)i, B32B 27/08(2006.01)i, B32B 7/12(2006.01)i, G02B 5/30(2006.01)i**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20년 05월 14일 (14.05.2020)

심사관  
민인규  
전화번호 +82-42-481-3326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b)).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15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KR 10-2014-0006876 A (다이니폰 인사츠 가부시키키가이샤) 2014.01.16

D2: KR 10-2017-0129669 A (주식회사 엘지화학) 2017.11.27

I. 신규성 및 진보성(PCT 제32조(2) 및 (3))

1. 청구항 1-15

D1은 요오드계 편광 소자 및 편광 소자 표면에 형성되며 저굴절률층이 포함된 반사 방지 필름을 개시하고 있습니다(청구항 1, 8; 단락 [0158] 참조).

다만, 청구항 1-3은 수식 4를 만족하는 내적화층을 포함하는 광학적층체라는 점에서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D1에는 PETA(펜타에리트리톨 트리아크릴레이트)와 중공형 실리카 입자, 불소계 화합물, 광중합개시제 및 MIBK(메틸이소부틸케톤)으로 형성되는 저굴절률층이 기재되어 있고(단락 [0177]-[0185] 참조), D1의 저굴절층이 본원 발명의 내적화층에 대응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D1의 저굴절층의 물성 및 파라미터 또한 청구항 1-3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D1으로부터 청구항 1-3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4-5, 7은 D1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D1의 저굴절률층이 본원 발명의 내적화층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D1으로부터 청구항 4-5, 7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6, 9-12는 D1의 저굴절률층은 (메트)아크릴수지와 중공형 실리카 입자를 함유하는 것으로부터 도출 가능합니다(청구항 1, 5; 단락 [0177]-[0185] 참조).

추가 기재란에 계속

##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13, 15는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험에 의해 최적화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청구항 14는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설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7, 9-15는 D1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청구항 8은 D2의 TMPA(트리메틸올프로판 트리아크릴레이트), 중공형 실리카, 함불소 화합물, 개시제 및 MIBK(메틸이소부틸케톤)으로 형성되는 저굴절층의 코쉬 파라미터가 A는 1.0-1.50이고, B는 0-0.007이고, C는  $0-1 \times 10^{-3}$ 인 것으로부터 도출 가능합니다(청구항 1; 단락 [0026]-[0040], [0202]-[0215] 참고).

따라서, 청구항 8은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 II. 산업상 이용가능성(PCT 제33조(4))

청구항 1-15는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